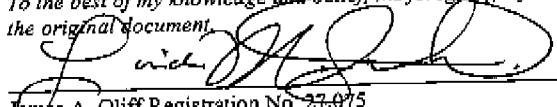


Mail Stop: Assignment Recordation Services Director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O. Box 1450 Alexandria, VA 22313-1450		RECORDATION FORM COVER SHEET PATENTS ONLY		U.S. DEPARTMENT OF COMMERC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Attorney Docket No. <u>130489</u>	
Please record the attached original document or copy thereof.					
Total number of pages including cover sheet, attachments, and document: <u>13</u>					
1. A. Name of conveying party(ies): EL KOREA CORPORATION B. Additional name(s) of conveying party(ies) attached?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2. A. Name and address of receiving party(ies): ELK CORPORATION 687 GWANGPYEONG-DONG YUSEONG-GU, DAEJEON 305-509 KOREA B. Additional name(s) & address(es) attached?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3. A. Nature of conveyance: <input type="checkbox"/> Assignment <input type="checkbox"/> Merger <input type="checkbox"/> Security Agreeme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Change of Name (as evidenced by Assignment Recordation filed July 8, 2008 in U.S. Application No. 11/579,003; please also see Reel 021211 Frame 0560) <input type="checkbox"/> Other B. Execution Date: <u>January 1, 2008</u>					
4. A. Patent Application No.(s) <u>11/628,642</u> Additional numbers attached?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C. Title of Application: <u>FLEXIBLE EL DEVICE</u>			B. Patent No.(s)		
5. Name and address of party to whom correspondence concerning document should be mailed: Name: <u>James A. Oliff</u> Address: OLIFF & BERRIDGE, FLC P.O. Box 320850 Alexandria, VA 22320-4850 Phone Number: 703-836-6400 Fax Number: 703-836-2787			6. Total number of applications and patents involved: <u>1</u> 7. Please charge Deposit Account No. 15-0461 the total fee (37 CFR 3.41) in the amount of \$40.00. 8. Credit any overpayment or charge any underpayment to deposit account number 15-0461.		
9. Statement and signature. <i>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foregoing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any attached copy is a true copy of the original document.</i>  James A. Oliff Registration No. 37,075 Linda M. Saltiel Registration No. 51,122 Date: <u>December 9, 2008</u>					

CH \$40.00 150461 11628642

Verification of Translation

IN THE MATTER OF
U.S. Patent Application
No. 11/579,003

I, Youn-Jung CHOI, of 112-1303 LG Village 1-cha Apt., Seongbok-dong, Suji-gu, Yongin-si, Gyeonggi-do 448-980, Rep. of Korea, hereby declare that I am the translator of the extract of the Corporation Registry indicating the changes of name and address of the assignee of the above-identified U.S. Patent Application and certify that the following is a true translation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Signed on July 7, 2008



(Youn-Jung CHOI)

Register No.		008161		Corporation Registry (Cancelled Items Included)	
Corporation I.D. No.		160111-0081614			
Name of Company				Changed	
EL KOREA CORPORATION				Registered	
ELK CORPORATION				2007.03.05. Changed	
				2007.03.16. Registered	
Head Office				2000.06.27. Changed	
82-2 MINPYEONG-DONG, DAEDEOK-GU, DAEJEON				2000.06.29. Registered	
48-21 MINPYEONG-DONG, DAEDEOK-GU, DAEJEON				2005.07.25. Changed	
				2005.08.01. Registered	
687 GWANPYEONG-DONG, YUSeONG-GU, DAEJEON				2008.01.02. Changed	
				2008.01.04. Registered	

- 1/9 -

Supreme Court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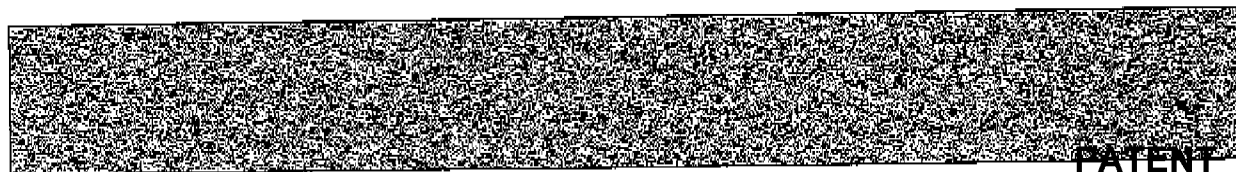
등기번호	008161		
등록번호	160111-0081614		
상 호	이엘코리아 주식회사		변경 등기
	이엘케이 주식회사	2007.03.05	변경 등기
본 점	대전 대덕구 문평동 82-2	2000.06.27	변경 등기
	대전 대덕구 문평동 48-21	2000.06.29	변경 등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87	2005.07.25	변경 등기
		2005.08.01	변경 등기
		2008.01.02	변경 등기
		2008.01.04	변경 등기
광고방법	대전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대전일보에 게재한다.		변경 등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07.03.05	변경 등기
		2007.03.16	변경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변경 등기
	금 500 원	2007.03.05	변경 등기
		2007.04.09	변경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600,000 주	1999.10.26	변경 등기
		1999.10.28	변경 등기
	2,000,000 주	2004.07.29	변경 등기
	60,000,000 주	2004.08.10	변경 등기
		2007.03.05	변경 등기
		2007.03.16	변경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480,000 주 보통주식 480,000 주	금 2,400,000,000 원	2000.08.08 변경 2000.08.0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78,000 주 보통주식 578,000 주	금 2,890,000,000 원	2001.08.04 변경 2001.08.0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89,000 주 보통주식 289,000 주	금 1,445,000,000 원	2004.09.01 변경 2004.09.0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11,565 주 보통주식 289,000 주 우선주식 122,565 주	금 2,057,825,000 원	2004.09.16 변경 2004.09.1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12,090 주 보통주식 289,525 주 우선주식 122,565 주	금 2,060,450,000 원	2006.01.06 변경 2006.01.0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37,090 주		2006.12.29 변경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급확인번호 1618-AQMP-VEMO

00001250411601384000810101209601B9E9BCF8BDC4 10 발행일:2008/04/30



PATENT

등기번호	008161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보통주식	314,525 주	금 2,185,450,000 원	2006.12.29 등기
우선주식	122,565 주		
발행주식의 총수	4,370,900 주	금 2,185,450,000 원	2007.03.05 변경 2007.04.09 등기
보통주식	3,145,250 주		
우선주식	1,225,650 주	금 3,102,758,500 원	2007.05.02 변경 2007.05.0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205,517 주		
보통주식	6,141,017 주	금 4,302,758,500 원	2007.10.23 변경 2007.10.23 등기
우선주식	64,5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8,605,517 주	금 4,353,713,500 원	2007.10.30 변경 2007.10.31 등기
보통주식	8,541,017 주		
우선주식	64,500 주	금 4,377,907,000 원	2007.10.30 변경 2007.11.0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8,707,427 주		
보통주식	8,707,427 주	금 4,416,132,500 원	2007.11.06 변경 2007.11.06 등기
우선주식	48,387 주		
발행주식의 총수	8,832,265 주		
보통주식	8,832,265 주		

목적

1. 전기전자 소재.부품 제조 및 판매업
2. 전기전자 소재.부품 수입 수출사업
3. 전기전자 소재.부품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1.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2007.03.05 추가 2007.03.16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신동혁 580313-1*****	2002년 03월 26일 사임	2002년 04월 08일 등기
이사 박근섭 630415-1*****	2002년 03월 26일 사임	2002년 04월 08일 등기
이사 박재연 651213-1*****	2002년 03월 26일 사임	2002년 04월 08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신동혁 580313-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23-1	2001년 01월 03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박근섭 630415-1*****	대전 유성구 아문동 99 헌빛(아) 127 1308	2001년 01월 03일 등기
감사 신동선 600102-2*****	2002년 03월 26일 중임	2002년 04월 08일 등기
	2005년 03월 23일 퇴임	2005년 04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신동혁 580313-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23-1	2001년 01월 03일 등기
	2001년 01월 02일 취임	2001년 01월 03일 등기

발급확인번호 1618-AQMP-VEMO

00001250411601384000810101209601B9E9BCF8BDC4 10 발행일:2008/04/30

- 2/9 -



PATENT

REEL: 021954 FRAME: 0171

등기번호	008161		
대표이사 신동혁 580313-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4 상록마을 108-405	2003년 06월 02일 주소변경	2003년 07월 07일 등기
		2004년 01월 02일 중임	2004년 01월 12일 등기
대표이사 신동혁 580313-1*****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200 독립문극동아파트 111-103	2005년 05월 31일 주소변경	2005년 06월 13일 등기
대표이사 신동혁 580313-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카동 546 대봉마을2단지아파트 205-402	2006년 09월 15일 주소변경	2006년 09월 27일 등기
대표이사 신동혁 58031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23-1	2006년 11월 01일 주소변경	2006년 11월 08일 등기
대표이사 신동혁 580313-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카동 546 송림마을6단지아파트 605-402	2007년 02월 23일 주소변경	2007년 03월 06일 등기
		2008년 03월 28일 중임	2008년 03월 31일 등기
이사 신동혁 580313-1*****		2002년 03월 26일 취임	2002년 04월 08일 등기
		2005년 03월 26일 중임	2005년 04월 06일 등기
		2008년 03월 28일 중임	2008년 03월 31일 등기
이사 박근섭 630415-1*****		2002년 03월 26일 취임	2002년 04월 08일 등기
		2004년 07월 29일 사임	2004년 08월 10일 등기
이사 박재연 651213-1*****		2002년 03월 26일 취임	2002년 04월 08일 등기
		2005년 03월 26일 퇴임	2005년 04월 06일 등기
이사 코병철 690113-1*****		2004년 07월 29일 취임	2004년 08월 10일 등기
		2007년 07월 29일 퇴임	2007년 08월 06일 등기
이사 이종호 681217-1*****		2004년 07월 29일 취임	2004년 08월 10일 등기
		2006년 04월 14일 사임	2006년 04월 26일 등기
이사 신훈철 281120-1*****		2005년 03월 26일 취임	2005년 04월 06일 등기
		2008년 03월 28일 중임	2008년 03월 31일 등기
감사 윤재권 581013-1*****		2005년 03월 26일 취임	2005년 04월 06일 등기
		2007년 03월 05일 사임	2007년 03월 16일 등기
이사 김문경 551201-1*****		2007년 03월 05일 취임	2007년 03월 16일 등기
이사 김성만 600202-1*****		2007년 03월 05일 취임	2007년 03월 16일 등기
감사 주창업 581222-1*****		2007년 03월 05일 취임	2007년 03월 16일 등기

발급확인번호 1618-AQMP-VEMO

00001250411601384000810101209601B9E9BCF8BDC4 10 발행일:2008/04/30

- 3/9 -



PATENT

REEL: 021954 FRAME: 0172

등기번호

008161

기 타 사 항

1. 정의개서대리인

증권예탁결제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2006년 12월 22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제1종 우선주

1. 우선주식의 발행 및 인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 우선주 122,565주
- 2) 신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 금31,000원
- 3) 신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 : 금5,000원
- 4) 주금납입일 : 2004년 9월 15일

2. 우선주의 성격

- 1) 우선주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 2) 전환상환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 1) 전환상환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투자자”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액” 기준 최소 연3%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배당 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단, 발행년도 사업년도의 미배당분에 대해서는 누적하지 아니한다.
- 2)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에 배당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배당 받을 수 있으며, 배당받을 주식의 수는 본건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수로 한다.

4. 전환에 관한 사항

- 1) “투자자”는 “납입기일” 이후부터 존속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본건 전환상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2) 본건 전환상환우선주는 존속기간 동안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가 있는 날에 그 리고 존속기간 동안에 전환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3) 전환조건

- 가. 원칙적으로 본건 전환상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단, 제나항의 특약에 의하여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은 조정된다.
- 나. 상기 제가항에 의한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은 2005년 경상이익에 따른 우선주1주당 보통주전환비율은 경상이익이 17.5억 이하인 경우 2.58주, 17.5억 초과 22.5억 이하인 경우 1.63주, 22.5억 초과 27.5억 이하인 경우 1.24주, 27.5억 초과 32.5억 이하인 경우 1.00주, 32.5억 초과 37.5억 이하인 경우 0.84주, 37.5억 초과 42.5억 이하인 경우 0.78주, 42.5억 이상인 경우 0.66주로 한다.

- 4) 기나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5. 상환에 관한 사항

- 1) 상환청구기간 : “투자기업”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중

발급확인번호 1618-AQMP-VEMO

00001250411601384090810101209601B9E9BCF8BDC4 10 발행일:2008/04/30

- 4/9 -

에명원

PATENT

REEL: 021954 FRAME: 0173

등기번호	008161
<p>권업협회 공개시장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 는 2007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일정 및 비율에 따라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p> <p>가. 2007년 7월 1일부터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50%</p> <p>나. 2008년 4월 1일부터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 중 이미 상환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p> <p>2) 상환방법 : “투자자” 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상환.</p> <p>3) 상환가액 : 상환이 청구된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 동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상환우선주 발행일까지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다.</p> <p>4) “투자기업” 이 2007년 6월 30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경우 “투자기업” 의 상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p> <p>2004년 09월 16일 경정 2007년 04월 26일 동기 2007년 04월 25일 신청착오에 의한 경정등기 신청</p> <p>1. 전환주식 전환주식의 전환 우선주1,161,150주를 보통주2,995,767주로 전환 2007년 05월 02일 변경 2007년 05월 08일 동기</p> <p>1. 전환주식의 전환 전환주식의 전환 우선주64,500주를 보통주166,410주로 전환 2007년 10월 30일 변경 2007년 10월 31일 동기</p> <p>1. 전환주식의 전환 우선주 48,387주를 보통주 124,838주로 전환 2007년 11월 06일 변경 2007년 11월 06일 동기</p>	

전 환 사 채	
제 1 회 전환사채	
< 2005년 12월 09일 발행	2005년 12월 12일 동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500,000,000원	
< 2005년 12월 09일 발행	2005년 12월 12일 동기 >
금350,000,000원	
< 2007년 10월 30일 일부전환	2007년 11월 02일 동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50,000,000원권 1종	
< 2005년 12월 09일 발행	2005년 12월 12일 동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액면금 전액	
< 2005년 12월 09일 발행	2005년 12월 12일 동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발급확인번호 1618-AQMP-VEMO

00001250411601384000810101209601B9E9BCF8BDC4 10 발행일:2008/04/30



등기번호	008161
<p>금31,000원(액면가 금5,000원)에 대하여 1주의 비율 < 2005년 12월 09일 발행 2005년 12월 12일 등기 ></p> <p>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기명식 제1종 우선주식 < 2005년 12월 09일 발행 2005년 12월 12일 등기 ></p> <p>1.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로 한다. 단, 전체발행액 중 70퍼센트는 2007년 6월 1일부터 전환할 수 있다. < 2005년 12월 09일 발행 2005년 12월 12일 등기 ></p>	

신주인수권부사채

제 1 회 무보증 분리형 해외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 제이피와이 370,000,000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 제이피와이 1,000,000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전액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 제이피와이 370,000,000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제이피와이 370,000,000에 대하여 서울 외국환중개 주식회사에서 고지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신주식의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1주의 금액 금오천원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그 발행가액은 금삼만오천원이다.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2007년 12월 12일부터 2011년 10월 25일까지

2006년 11월 24일 발행 2006년 12월 22일 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

제2회 무가명 무보증 분리형 국내 신주인수권부사채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 5,000,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3종 (금 2,000,000,000원권, 금 500,000,000원권, 금 100,000,000원권)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액면금 전액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 5,000,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가. 사채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으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할

발급확인번호 1618-AQMP-VEMO

00001250411601384000810101209601B9E9BCF8BDC4 10 발행일:2008/04/30

- 6/9 -

리범원

PATENT

REEL: 021954 FRAME: 0175

등기번호	008161
<p>수 있다.</p> <p>나. 행사가격 : 1주당 금 4,110원</p> <p>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액면 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p> <p>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p> <p>2009년 4월 8일부터 2011년 3월 8일까지</p> <p>2008년 04월 08일 발행 2008년 04월 15일 등기</p>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 회사는 임직원 및 회사발전에 기여할 외부전문가에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제 1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음)~~

~~나.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그 특수관계인~~

~~다.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2.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의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3.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임직원의 경우 그 수는 제각각의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회사의 경영 및 기술개발에 협력한 공헌을 한 자로서 당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자~~

~~나. 회사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에 기여할 능력을 지닌 우수인력으로서 임시 사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자~~

~~4.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액면가 이상으로 정한다.~~

~~5. 주식매입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결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권리를 부여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할 경우~~

~~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위 또는 중대한 죄실로 범인에 손해를 입혀 해임되거나 징계 해직된 경우~~

~~다.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 주식매입선택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이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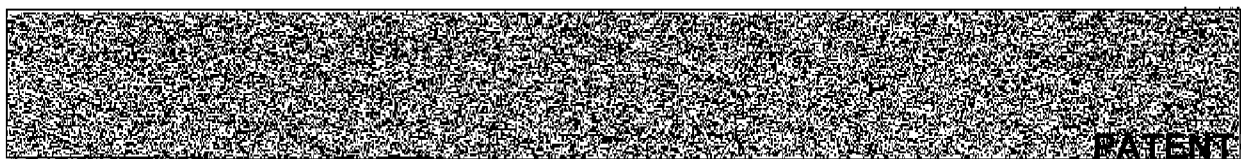
< 2000년 12월 28일 변경 2001년 07월 06일 등기 >

~~1. 회사는 임직원 및 회사발전에 기여할 외부전문가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범위 내~~

발급확인번호 1618-AQMP-VEMO

00001250411601384000810101209601B9E9BCF8BDC4 10 발행일:2008/04/30

- 7/9 -



등기번호	008161
<p>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가. 제1태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음)</p> <p>나.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와 그 특수관계인</p> <p>다.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p> <p>2.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3.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임직원의 경우 그 수는 제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p>가. 회사의 경영 및 기술개발에 현격한 공헌을 한 자로서 당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자</p> <p>나. 회사의 경영 또는 기술개발에 기여할 능력을 지닌 우수인력으로서 임시 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자</p> <p>4.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에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액면기 이상으로 한다.</p> <p>5. 주식매입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p> <p>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할 경우</p> <p>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입혀 해임되거나 징계 해직된 경우</p> <p>다.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p> <p>라. 기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7. 기타 주식매입선택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이를 정한다.</p>	
<p>< 2004 년 07 월 29 일 변경 2004 년 08 월 10 일 등기 ></p>	
<p>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p> <p>회사는 임직원 및 회사발전에 기여할 외부전문가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p> <p>다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3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p>	
<p>< 2007 년 03 월 05 일 변경 2007 년 03 월 16 일 등기 ></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p> <p>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 2007 년 03 월 05 일 변경 2007 년 03 월 16 일 등기 ></p>	

발급확인번호 1618-AQMP-VERO

00001250411601384000810101209601B9E9BCF8EDC4 10 발행일:2008/04/30



PATENT

등기번호	008161
------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임직원의 경우 그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나.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
 다.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외부전문가
 < 2007년 03월 05일 변경 2007년 03월 16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입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2007년 03월 05일 변경 2007년 03월 16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입혀 해임되거나 징계 해직된 경우
 다.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07년 03월 05일 변경 2007년 03월 16일 등기 >

회사설립연월일 1999년 04월 28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로부터 이기
 2000년 12월 08일 등기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08년 04월 3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강한수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변경,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합니다.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f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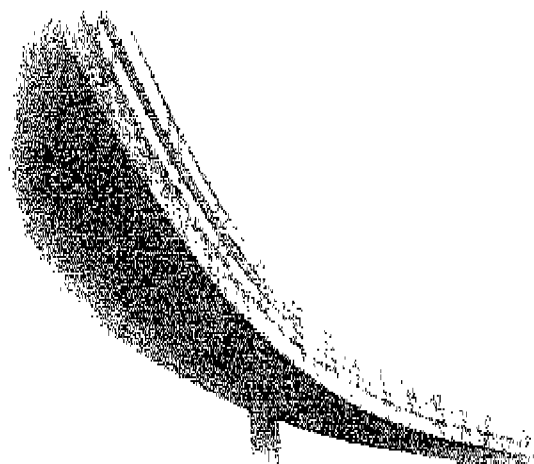
발급확인번호 1618-AQMP-VEMO

00001250411601384000810101209601B9E9BCF8BDC4 10 발행일:2008/04/30

- 9/9 -



SINCE
1999 ~ Present



- 2007. 07 Awarded Gold prize in a Technology First 500 award and technology
- 2007. 05 Obtain ISO 14001:2004 certification
- 2007. 03 The company changed name to ELFI Corporation.
- 2006. 11 Awarded US\$10 Million Export Tower prize
World class company certification
- 2005. 05 Begins mass production of K-Flex for Motorola
- 2004. 06 Commercializes K-Flex and begins mass production for Samsung Corporation
- 2003. 06 Develops K-Flex EL
- 2003. 06 Develops K-Flex EL for keypad back light of mobile phone
- 2002. 10 Obtain ISO 9001:2000 certification
- 2002. 07 Selected as technologically innovative SME.
Selected as promising SME.
Selected as export promising SME
- 2002. 02 Begins mass production and selling of raw material for EL.
- 2001. 08 Begins mass production of backlight for Hyundai LCD Cell
- 2000. 07 R&D Center was certified (The director of R&D Center Prof. DongHyuk Shin)
- 1999. 12 Develops large size EL sheet for advertisement
- 1999. 09 Rejoins to KAIST High Technology Center
- 1998. 04 EL Polya Corp. was established.